용인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

제정 2022. 8.16 조례 제2331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산정) ① 용인시장은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(이하 "점용료·사용료"라 한다)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.
 - 1. 법 제8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4호,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: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
 - 2.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
 - 가. 준설토(浚渫土)를 매립·성토(盛土)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: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
 - 나.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: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
 - 3.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
 - 가.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: 인수·배수펌프의 용량
 - 나.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: 인수관·배 수관의 지름

용인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

- 4.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: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· 돌·모래의 시장가격
- 5.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: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·돌·모래의 시장가격
- ② 제1항에서 "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"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,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. 다만,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·하천·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점용료·사용료의 산정방식(제2조제1항 관련)

구 분	산정방식(단위 : 연간)
1. 잔교(棧橋: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)·호안(기슭·둑 침식 방지시설)·소형선 부두(야적장을 포함한다)·방파제·건축물,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(관로 매설을 포함한다)를 위한 점용-사용(하천·구거 부지(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-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]	가.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 격의 100분의 3. 다만, 「도로법」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 업(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)인 경우에는 인 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.5로 한다.
	 나.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(교각 면적은 제외한다), 해저터널 (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)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.5로 한다. 다. 케이블카,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・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.5로 한다.
2. 조선용 선가대(선박을 땅 위로 끌 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 비)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 로 하는 의장안벽(擬裝字壁), 선거 (船渠)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·사용	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
3.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· 사용	가. 전기사업용수 m'/초당 연액 20만원 나.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: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: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: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: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: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: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: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: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: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: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m'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
	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= <u>관의 지름² × 관내유속(m/sec)</u> 146 ² × 60

구 분	산정방식(단위 : 연간)
4. 흙·돌·모래·자갈 또는 준 토(매립용·성토용 또는 골 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당한다) 채취를 위한 점· 사용	재 기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 흙·돌·모래·자갈 또는 준 해 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. 다만, 해당 조사가
5.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·사용	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.5. 다만,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 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 지가격의 100분의 0.25까지 낮출 수 있다.
6.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 점용·사용	한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. 다만,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·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.5로 한다.
7. 「광업법」 및 「해저광 자원 개발법」에 따른 광 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 사용	물 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
8.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한 점용·사용(「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 제7조 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 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외한다)	및 제 배
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 목적 외의 점용·사용	한 가. 스케이트장·운동장·수영장·대기장·탈의장·골프장을 위한 점용·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.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.5
10.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점 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	용.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.5

비고

- 1. "토지가격"이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결정·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, 점용료·사용료 부과·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개별공시지가가 결정·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.
- 2. 점용·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.
- 3.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, 흙·돌·모래·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에서 실시하여야 하며, 용인시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경기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.
- 4. 점용료·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(日割)로 계산한다.
- 5. 점용면적에 1m'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총 점용면적이 1m'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6. 용인시장이 점용료·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·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 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